

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재)금천미래장학회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재)금천미래장학회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71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9. 5.
- 라. 회부일자 : 2022. 9. 5.

2. 제안이유

금천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금천미래장학회 사무국을 구청 지하1층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무상사용 시설현황
 - 1) 사용기관 :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 2) 사용장소 : 금천구청 지하1층
 - ※ (현) 평생학습관 사무실 공간 재배치 후 일부분 사용 예정
 - 3) 사용면적 : 48 m^2
 - 4) 사용목적 : 금천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사무국 사무공간으로 사용

5) 사 용 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6) 사용기간 : 2024. 1. 1. ~ 2028. 12. 31

※ 재단 사무실 별도 이전시까지 5년 단위 허가연장 추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

4. 사업의 필요성

가. (재)금천미래장학회의 기본재산이 증대함에 따라 체계적·전문적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운영 필요

나. 유상대부로 사무국 공간을 마련할 경우 재단의 운영비 지출이 늘어 상대적으로 장학사업비 감소로 장학금 수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5. 관계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행정지원)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라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 (재)금천미래장학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으로 우리구청 지하1층 (현) 평생학습관 사무실 공간 일부분 48 m^2 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천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취지에 맞도록 면밀한 계획수립과 다각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2022. 11. 15.>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2022. 11. 15.>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8. 22.] [대통령령 제33673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 7. 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7. 20., 2022. 4. 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2. 18., 2022. 4. 20.>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2020. 12. 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전문개정 2009. 4.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4]

(일부개정) 2016.10.14 조례 제880호

- 제8조(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장학회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